

교직과정 운영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.

□ 개정 : 2017. 05. 01.

□ 개정 : 2018. 04. 0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수원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직과정의 이수)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의 학생 중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재학 중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학과)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(과)는 ‘별표 1’ 과 같다.

제4조(교직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 단위에 소속된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말 지정 기간 내에 ‘교직과정이수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을 경유 교무과에 제출한다.

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자 중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.

제5조(이수학점 및 과목) ①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실습 2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22학점이며 과목별 학점배정은 ‘별표 2’ 와 같다.

②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과 교과교육영역(8학점 이상)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이며,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은 ‘별표 3’ 과 같다.

③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이수도중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6조(교직 복수전공) ①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에 한한다.

②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‘교직복수전공신청서’를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과 교과교육영역(8학점 이상)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육실습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제1전공에서 실시한다.

⑤ 교직복수전공 이수자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제1전공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, 복수전공하는 제2전공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.

제7조(교육실습)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지정된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.

- ①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중 교육실습신청서와 승인서를 교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하며, 교육실습 이수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.
- ③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한다.

제8조(적성 및 인성검사와 안전교육) 교직적성검사 및 인성검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,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전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원자격 무시험검정)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자는 4학년 2학기말 지정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.
 - 2. 성적증명서 1부.
 - 3.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(영양교사 (2급)신청자에 한함)
-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은 ‘별표 4’ 와 같다.

제10조(교원자격증 발급) 제8조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다.

제11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「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」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) 「교직과정 이수 규정」을 「교직과정 운영 규정」으로 변경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 「교직과정 이수 규정」에서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